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[별지 제42호서식] <개정 2020. 4. 13.>

영업의 폐업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
신고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영업소	종류	업소명
	소재지	

폐업일	년 월 일

영업허가증・영업신고증・영업등록증 분실사유

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영업허가증,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※ 영업허가증,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,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	수수료 없 음

참고사항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(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).

처리 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(세무서로 송부)	→	검토	→	결재	→	통보
신고인		처리기관: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, 특별자치시・특별자치도・시・군・구					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